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단기근속자 비율 등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6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단기근속자 비율 등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	3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한시적·시간제·비전형(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 등)근로자] 비율은 2024년 38.2%로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였음.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근로자의 1년미만 근속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1년미만 근속비율은 51.6%에 달했음.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03개월(8년 7개월)인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4개월(2년 10개월)에 불과했음.

이에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3년 동안 인정받은 사람 중 다른 사업으로 이직한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으로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2025년 현재 0.9%)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2025년

현재 기준 최대 1.26%) 하려는 것임(이른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2. 주요내용

가.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 2제1항 본문).

나. 안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근로자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단기근속자 비율 등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결정할 때 ①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및 ②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 대비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직전 보험연도 대비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을 40%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하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단기근속자 비율 등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

우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격자”라 한다)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 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 노무제공자

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 비율과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발의(의안번호 2201989)한 바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9월 국회에 보고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담긴 단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같은 취지임.

이는 사업주가 일감 감소 시 유급휴업 또는 휴가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계약을 지속하여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게 하거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하여 구직급여를 받게 하는 등의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한 단기 일자리 계약 체결 관행을 방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안은 3년 동안 ①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및 ②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하되(안 제13조의2제1항),

그 비율을 산정할 때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제2항).

참고로 현행법 제15조제1항¹⁾ 역시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을 고려한 보험료율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①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만을 고려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이 비율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고, ②‘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전체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 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하여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③현행법 제15조제1항은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하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상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다름.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비자발적 이직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함으로써 단기 일자리 체결 관행을 방지하고 또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줄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담 여부의 기준이 되는 단기 근로자의 비율과 보험료 부과액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 증액 비율은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상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료 추가 부담은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이므로 법률에 대강의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소규모 기업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이 높아 보험료 추가 부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경

영상 어려움 등이 우려되므로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기 근속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